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23호 2022. 8. 5.(금)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169호(2022.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179호(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 (안) 행정예고) 5

회							
람							

2022.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22년 1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6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고 다음과 같이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개별주택 : 2022년 8월 5일 ~ 8월 24일
- 공동주택 : 2022년 8월 9일 ~ 8월 29일

○ 열람대상 :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단독·다가구 등 31호) 및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등)의 가격(안)

○ 열람장소

- 개별주택 : 연수구청 세무1과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http://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

○ 제출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연수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방문 또는 팩스제출
(전화 ☎ 032-749-7482, 팩스 032-749-7457)
- 공동주택 :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점에 우편·방문 또는 팩스제출
(전화 ☎ 032-437-6771~5 팩스 032-437-6779)

○ 제출서류 : 「개별(공동)주택 가격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검증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반영된 가격을 결정·공시(9. 29) 및 개별통지

○ 처리결과 확인기간 : 2022. 9. 29. 이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http://www.realtyprice.kr))

2022. 8. 5.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의견가격		
	원		원		
		의견제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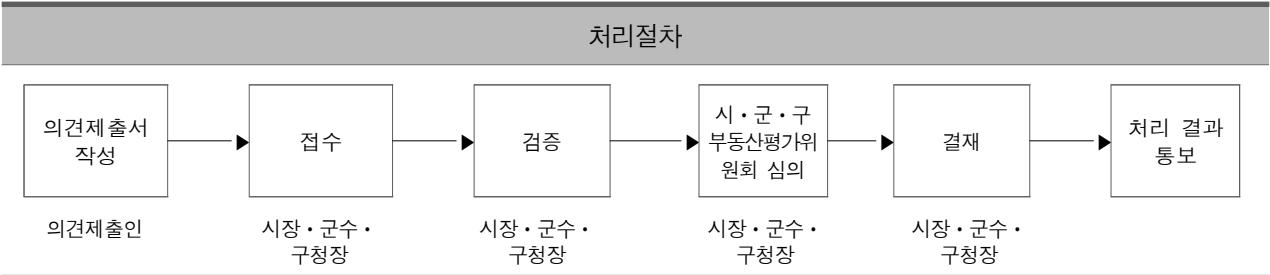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공동주택	소재지 및 지번		
	명칭(단지명)		
	동명	호명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열람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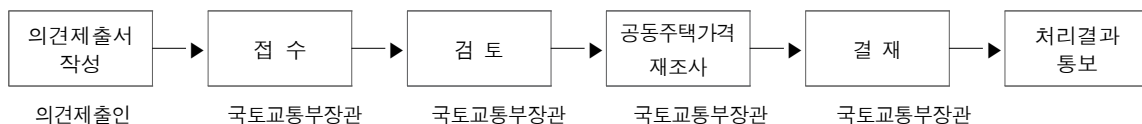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 · 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 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5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 . .

(성명)

(서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한다.

2022. 8. 5.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행정예고명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목적

- 특정구역과 정비시범구역이 중복 지정된 구역에서 간판정비사업 미 시행으로 정비시범구역지정 일부 변경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사실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8. 5 ~ 2022. 8.25(20일간)

5. 예고방법 : 구보, 區 홈페이지, 區·洞 게시판, 전국 시·군·구

6. 의견제출

○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기한 : 2022. 8. 5 ~ 2022. 8.25(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민원접수)

○ 제출기관

- 주소 : 인천광역시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6층 도시계획과

- 전화 : 032-749-8642, FAX : 032-749-8639

붙임 1. 의견서 1부.

2.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안). 끝.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행정예고명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예고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행정예고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2>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 8. 5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제1조(목적)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품격있는 광고문화 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변경)

특정구역과 정비시범구역이 중복 지정된 구역에서 간판정비사업 미 시행으로 정비시범구역지정 일부 변경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정 변경한다. ([붙임] 별도 도면 표기)

연번	기정	변경	비고
1	옥골구역 도시개발구역 동춘1, 2구역 도시개발구역	폐지	2017.11. 7 (2017-100호)
	연수동 600, 600-1, 600-2, 600-3, 600-4, 600-5, 600-6, 631, 631-1, 631-2, 631-3, 631-4, 631-5, 631-6, 597-3, 597-4, 599, 599-1, 599-5 청학동 503-1, 503-3, 503-4	변경없음	
연번	기정	변경	비고

2	동춘동 936, 936-1, 936-2, 936-3, 936-5, 936-6, 936-7, 936-8, 937	변경없음	2017.11. 7 (2017-100호)
3	연수동 634 (우성2차아파트 상가)	변경없음	
4	옥련동 194-4, 194-5, 194-42	변경없음	
5	연수동 582-2 (연수1차시영아파트 임대상가 401동, 402동)	변경없음	
6	연수동593-3외 2필지, 연수동593외 2필지, 연수동596외 1필지, 청학동499외 1필지 (연수푸르지오 1,2,3,4단지), 동춘동 926 (스퀘어원)	폐지	

제3조(표시방법의 강화 또는 완화 내용)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제4조부터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간판의 총수량)

- ①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벽면이용 가로형 간판 1개와 돌출간판 1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의 경우 벽면이용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제5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등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 ② 광고물 등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한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의 다른 광고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 및 신고 등)

- ①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 등은 이 고시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벽면이용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벽면이용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의 7층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단, 1층의 경우 파사드를 이용한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가로형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점포폭 이내, 세로크기는 1층은 50cm 이내로 하고, 1층 증가시마다 5cm 증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출간판 1면의 면적은 업소당 2㎡ 이내로 한다.
2.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연립형 또는 일직선상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아·미용업소의 표지는 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개의 업소만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2. 지주이용간판은 1개 건물에 1개만 표시하되 연립형의 종합싸인보드 형식으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업소당 표시면적은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고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10미터 이내로 한다.
3. 4개 업소 이상을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은 광고물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제10조(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특례) 건물의 특성 및 간판의 디자인상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 및 조례 표시방법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된 광고물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기간 동안 표시할 수 있다.
- ③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붙임1】

정비구역 지정현황

1. 연수동 600번지 등



2. 동춘동 936번지 등



3. 연수동 634



4. 옥련동 194-4번지 등



5. 연수동 582-2 연수1차시영아파트 임대상가

